

「2025년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기업 주도 혁신·성장 지원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3. 28.

경 상 남 도 지 사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기업주도 혁신·성장 지원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 : 5개사
- 지원금액 : 심사결과에 따라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차등지원(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의 20%이상 현금부담(필수)
 - ※ 기업별 지원 규모는 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① ~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고용기업
- ③ 도내 소재(본사 및 주사업장 모두) 3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기업*
 - * 2021. 12. 31 이전 사업자 등록
- ④ (우대) 청년* 채용계획 기업, 여성기업, 제조업 외 기업
 -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관련, 만 19 ~ 39세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월까지
 - * 지원기간 : 수혜기업-도 간 업무협약 이후 실제 사업수행 기간

○ 지원방식

- 지급방식 : 지원금 분할지급(1차·2차)
- 지급시기 : (1차) 고용약정 이행 완료 후, 50% 지급
(2차)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50% 지급 여부 결정

○ 고용약정 : 지원금 15백만원 기준 정규직 1명 채용

- ※ 신규채용 약정조건 : '협약체결일 이후' 채용에 대하여 인정
 - 채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필수, 기 채용근로자 퇴사 시에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기 근로자와 대체 근로자 고용유지 기간을 합산해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 고용유지 기간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
* 채용근로자별로 4대 보험 '가입완료' 시점부터 3개월 이상 기간
- ※ 신규채용 제외조건
 - 사업주(법인은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
 - 1년 이내 동일 사업장 재취업자(단, 타사업장 취업 후 동일 사업장 취업은 인정)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과제요약서, 고용이행확약서 내 작성된 목표 청년 채용인력은 청년 외 다른 인력으로 신규채용했을 경우 약정이행 인정 불가
(예시) 채용목표 2명(청년) / 실 채용 1명(청년) + 1명(非 청년) ⇒ 1명만 인정

○ 지원유형

- 고용창출 계획을 동반한 자율프로그램 수행에 예산지원 ※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과제는 배제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유형(예시)>

유 형	세부분야 및 주요내용	비 고
기술 및 제품개발	- (제품고급화)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 개선,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지원 - (설 계) 판매 제품의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설계 지원 - (공정·설비개선)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공정 및 설비 성능 개선 지원 ※ 장비(설비) 도입이 주목적인 경우는 제외 - (시제품 제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또는 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술이전) 국내외 기술이전(기술도입)을 위한 이전비·중계비,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지원	30백만원 이내
사업화 및 시장개척	- (인증획득)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인증, 신뢰성 평가, 컨설팅비 등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분석 지원 등 - (브랜드 개발) 브랜드 전략 수립 및 브랜드 리뉴얼 - (사업화 전략수립) 국내외 시장조사, 컨설팅, 마케팅 전략 수립 등 - (디자인 개선) 신규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유의사항 : 지원유형 내 세부분야는 단일 또는 복수 분야 선택

3. 지원조건

- 기업별 신청내용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업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신규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
- 중간점검 및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협약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목표는 반드시 사업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
 - 사업기간 내 진행 및 완료된 사항만 지원대상으로 인정
- 사업기간 내 경상남도 외 타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에는 신청제외(부적격) 사유이므로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
-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 항목 또는 사업비 신청 시 제출한 예산 집행계획서에 명시된 항목은 예산사용 전까지 변경 신청·승인 후 사용 가능
- 본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비용은 지원 제외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제출한 지원 신청서 및 과제 계획서로 평가(심사위원회)
 - 2차 현장심사 및 컨설팅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평가(심사위원회)
 - ※ 현장심사 및 컨설팅 시 제안된 의견, 최종 선정 시 계획서 반영
 - 3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
-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적정성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심사위원회 요구 시 추가 자료 별도 제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I.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필요성	10	○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0)
	합목적성	10	○ 사업목적 및 목표달성 가능성 (5) ○ 사업 내용의 적정성 (5)
II. 사업실현 가능성 (20)	구체성	10	○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5) ○ 고용 목표 등 성과지표의 구체성 (5)
	현실성	10	○ 사업추진으로 인한 매출 확대의 구체성 (10) (기술·제품 개발 등)
III. 고용창출의 명확성 (40)	고용창출	35	○ CEO의 사업(일자리 확대) 추진 의지 (10) ○ 지역인재 채용 규모 및 적정성 (10) ○ 고용 유지 및 증대 방안 (15)
	청년채용	5	○ 채용대상 중 청년(만 19~39세) 수 (5) - 3명 이상(5), 2명(3), 1명(1)
IV. 기업성장 역량 및 기대효과 (20)	기업성장역량	10	○ 최근 3년간 매출액증가율 (5) ○ 최근 3년간 고용증가율 (5)
	기대효과	10	○ 신청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한 기대효과 (10)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가 점		5	○ 「여성기업법」에 따른 여성기업 (5) ○ 비제조기업 (5) ※ 중복 시 최대 5점 반영
계		105	

※ 가점은 1차 서류심사에만 반영되며,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 ▶ 부도,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 4대 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장비(설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산업재해 포함) 위반 등 사유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기업
- ▶ 결산 재무제표 상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기업
- ▶ 최근연도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등급'이하 기업
- ▶ 동일제품 및 내용으로 국비·지방비 등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연합체 구성 불가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포함)
- ▶ 제출기간의 경과,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 지원기간 내 경상남도 외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추진목표, 추진내용, 달성 가능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원기간(~25.11월) 내 사업완료 및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계획 제시 필수(25.12월 최종평가 실시예정)
- 제시된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되, 필요시 사진과 도면 첨부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	○ [서식 1] 사업 신청서	1부
필수	○ [서식 2] 과제계획서(15페이지 이내) - 과제요약서,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사업화 및 매출증대 전략,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 고용계획 등	1부
필수	○ [서식 3] 고용이행확약서 ※ 사업기간 내 지원금 15백만원 기준 정규직 1명 채용 - 과제이행에 따른 고용확약서(고용창출 목표량 포함)	1부
필수	○ [서식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 소요예산서 - 예산수립 증빙자료 [소요예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사업자등록증 포함)]	1부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1부
필수	○ 중소기업확인증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 발급본	1부
필수	[최근 3년간 기업현황 등에 대한 자료] ○ '22년 ~ '24년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 공고기간 내 유효한 기업 신용평가서(최근연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것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연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반드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적시되어야 함) ○ (외부감사 기업일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명시된 서류 ○ '22년 ~ '24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연도별 12월 31일 기준 조회)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일 현재 기준) ○ 4대 보험료 및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 발급본) ○ 기업·주력제품·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수출 관련 증빙자료 ○ 고용 현황(연차별 고용인력, 고용유지, 청년고용 비중 등)	각 1부
선택	○ 우대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법」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	1부

- ※ 1.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
2. 사업계획서의 불성실한 작성, 명확하지 않은 내용, 공란 및 제반서류 미제출(누락) 등 불성실한 서류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신청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미비(추가)서류 접수 불가

6. 유의사항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부가세는 기업 별도부담)**
-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평가 시 제외 또는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이후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 및 관련 내용 등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약,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금 부정 사용 등 참여기업이 사업과 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지원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반환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게 개별통보)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5. 3. 28.(금) ~ 4. 18.(금)
- 접수기한 : **2025. 4. 1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경남도청 산업인력과 중장년취업파트
주 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산업인력과
연락처	☎ 055-211-3662/ suki1205@korea.kr

※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문의처에 접수여부 확인

■ 과제 요약서

지원분야	<input type="checkbox"/> 기술 및 제품 개발 <input type="checkbox"/> 사업화 및 시장개척		
과제명	'기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명'		
사업비 (소요예산)	지원금	자부담	합계
	원	원	원
추진 과제 목표 및 내용 요약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주요 내용을 요약 기재		
기대효과	정량적, 정성적 효과 기술		
연내 고용약정인원	고용창출 총 인원 ()명		

1

기업현황

1.1 기업 연혁

기업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4) : 신규 설립 ○(1999.12)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00.01.06) : 유망 수출기업 인증 획득 ○ : ○ : ○ :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01.12) : 봉사활동 ○(2012.01.06) : 복지단체 기부 ○(2013.01.06) : 양로원 방문 및 기부

1.2 대표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H.P		E-mail	
주요경력	19 ~ 20		
포상 및 사회공헌			

1.3 기업 재무·신용정보(최근연도)

부채비율	(년)	유동비율	(년)
감사의견 (외부감사 기업일 경우)	(년)	기업신용 평가등급	(년)

1.4 정부과제 참여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관리기관

1.5 특허 등록(출원)현황

(단위 : 건)

번호	특허명	등록(출원)년도	등록(출원)국가	등록번호

1.6 기업 인증 현황

(단위 : 건)

번호	인증명	인증년월	인증번호

2

기업 관련 대내외 여건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기업의 아이템 및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처한 국내외 환경을 기업 내부 자원, 매출, 주요 역량 등 풀어서 기술, SWOT분석 및 전략 제시도 가능

3

사업 필요성 및 목표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필요성 및 목표 기입
- 일자리창출 목표 및 계획 등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 필요 시 이미지 또는 도표 활용

4

사업화 추진 계획 및 내용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기재
- 과제 개발 후 상용화 방안을 구체적(구매계약, 기술계약)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
- 시장진출(유통연계, 판로확보 방안)계획

5

추진일정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과제개발 및 사업화 추진일정을 표나 그림으로 작성

주요 내용	월	2025년도					
		6	7	8	9	10	11

6

일자리 창출 및 활용계획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일자리 창출 목표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 '25년 이후 중장기적인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구체적으로 표로 기입
 - 인재발굴 및 육성방법 계획 등
 - 채용에 따른 배치 활용 계획 등
- 고용을 위한 CEO의 의지와 구체적 매출 및 고용증대 방안 제시
 - 제품·서비스 개발의 시장 확대,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

채용분야	목표 채용인력 (목표인력 중 청년 수)	채용시기
	(명)	
	(명)	
총 계	(명)	

7

고용유지를 위한 회사의 노력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고용유지를 위한 사내 복지 및 근로환경 등 기재

8

기대효과

가. 정량적 기대효과

- 고용 창출성과(당해년도 고용성과)
- 매출 성과

나. 정성적 기대효과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기업매출 향상 및 고용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기반 마련 내용 등

9

소요예산 내역서

1. 사업비 총괄 (※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지원금액 20% 이상 현금 기업부담 필수) (단위 : 천원)

소요예산 (VAT 제외)	총 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확보 방안 :
- 예시 (※ 작성후 삭제)
 - 총사업비(12,000천원) = 지원금(10,000천원 / 80%) + 기업부담금(2,000천원 / 20%)

2. 세부 집행계획 (단위 : 천원, VAT 제외)

프로그램	세부내역 (* 재료 및 부품 등 명칭 자세히 명시)	수량 (횟수)	단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신제품 개발비	부품 가공 (OOOO)			
생산 설비	재료구매 (OOOO)			
마케팅비	홍보비 (OOOO)			
총 합계				

- 주의
 - 각 내역을 세분화하여 작성할 것
 - 예산 수립 증빙자료(견적, 시장조사 등) 제출되어야 함
 - 시제품 제작 지원의 경우, 실 시제품의 제작만 지원가능
 - 지원금 신청 시 과대 산정되어 있을 경우, 환수될 수 있음

3. 예산항목별 세부내역 (아래 보조비목 및 세목 안내 참고, 보탭6 공모신청서 작성시 예산집행계획 입력) (단위:천원)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산 출 내 역	재 원		
			계	도비	자부담
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비			
재료비	재료비	재료구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부품가공			
·					
·					
·					

(참조)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비목(편성목) 및 세목(통계목)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재료비	재료비	-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 및 기구, 기재,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희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기재 ○ 자부담은 지원 금액의 20%이상을 기재, 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부가세 발생 부분은 기업 부담 원칙 ○ 해당 예산계획은 사업수행 중 경남도의 현장실사 및 검수가 진행될 수 있음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지원 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신청기업의 대표자(실무자 포함)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매출액 등 신청서 작성서식 내 제반사항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미가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에 의한 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